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합111728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승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진술

변론 종결 2023. 3. 8.

판결 선고 2023.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013,685,012원 및 그 중 1,010,455,1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286,821,522원 및 그 중 286,820,941원에 대하여,

각 2021. 6. 18.부터 2022. 1. 24.까지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순서별로 '제1약정', '제2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의 제1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신용보증약정	2016. 11. 18.	2017. 11. 17.	1,000,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20. 11. 26.	2021. 11. 25.	285,000,000원
합계	1,285,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3항, 제10조에서는 피고 A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대출기관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구상금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위변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의 변경에 따라 2019. 4. 1.부터 연 8%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 변제

1)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제1약정의 보증기한을 2021. 11. 12.로 조건 변경하였다.

제1약정	제1보증	16. 11. 18.	17. 11. 17.	D은행	E	1,000,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 11. 26.	21. 11. 25.	기업은행	F	285,000,000원
합계	1,285,000,000원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제1약정	제1보증	2016. 11. 24.	D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250,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20. 11. 30.	기업은행	구매카드대출	300,000,000원
합계	1,550,000,000원				

3) 피고 A는 2021. 2. 5. D은행에, 2021. 2. 9. 기업은행에 각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각 대출기관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각 약정에 기한 미환급보증료(상환금)를 상계처리한 후, 남은 구상금(잔액금)은 아래와 같다.

제1약정	제1보증	2021. 6. 18.	1,016,245,553원	5,790,373원	1,010,455,180원
제2약정	제2보증	289,475,731원	2,654,790원	286,820,941원	
합계	1,305,721,284원	8,445,163원	1,297,276,121원		

4) 제1약정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채권 등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서 대지급금 잔액은 3,228,563원이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합계 1,850원(제1약정 1,269원 + 제2약정 581원)이다.

다.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B은 2021. 1. 5.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배당표 작성 등

1)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7. 대전지방법원 H(I, J 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2. 5. 12.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327,342,83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카단51588호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 5. 3. 인용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추가재산으로 토지 및 콘도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피고 C 이외에도 D은행, G, K, L은행, M카드, N회사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의 이행으로서 1,013,685,012원(제1약정 대위변제잔액금 1,010,455,180원 + 확정손해금 1,269원

+ 대지급금잔액 3,228,563원) 및 그 중 제1약정 대위변제잔액금 1,010,455,180원에 대하여, 피고 A는 제2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의 이행으로서 286,821,522원(제2약정 대위변제잔액금 286,820,941원 + 확정손해금 581원) 및 그 중 제2약정 대위변제잔액금 286,820,941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21.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1. 24.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과 피고 C의 각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C 가) 원고가 제1약정에 따라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시기는 2021. 6. 18.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회사운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5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11. 18. 제1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이후 원고가 2021. 6. 18. D은행에 보증채무를 변제하면서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다), ② 피고 A는 2020. 9.경부터 G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2021. 1.경 N회사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O은행 및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A의 당시 채무연체 내역에 비추어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이러한 가운데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2021. 1.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위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피고 B 명의 계좌로 2020. 10. 26. 300,000,000원을, 2020. 11. 2.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5.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한 2021. 1.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21. 7. 22.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926,624,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지인인 피고 B로부터 수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② 피고 C이 위 돈을 대여한 시점에는 피고 B로부터 담보로 받은 것이 없었는데, 2개월이 지난 2021. 1.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친 점, ③ 위 감정평가 기준일과 비교적 근접한 시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감정평가액인 926,624,100원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864,000,000원에 이른 상황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5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머지않아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A는 2021. 1. 21. O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연이어 2021. 1. 27.에도 D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변제자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C은 피고 B이 약속했던 수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C에게 327,342,8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길연

판사허인성

판사서제석

별지